

## 고정 자산세 · 도시 계획세에 관한 알림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매년 1월 1일 시점의 토지·가옥·상각자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년 4월 즈음에 과세됩니다.

연도중의 매매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월별로 다시 과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 연도의 세금을 전부 납부해 주십시오.

납세 통지서에 동봉되어 있는 납부서를 사용해,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